

자동차 점검·정비명세서 (고객용)



(영수증겸용)

의뢰자 및 사업자 정보

MA0D2620180321000001

차량 소유자	▶ 차량번호	69마2287	▶ 차종(차명)	쏘나타HEV	▶ 주행거리	10,286 km
	▶ 등록년월일	2014-02-20	▶ 점검·정비 의뢰일자 2018-03-21 09:53			
정비 사업자	▶ 사업자등록번호	110-01-22517	▶ 정비업등록번호	01-1115-000026	▶ 업태	서비스/자동차수리외
	▶ 업체명(대표자)	충정로정현대자동차 이봉학	▶ 주소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70 (충정 로3가)	▶ 연락처	02-313-8204
	▶ 점검·정비 완료일자	2018-03-21	▶ 출고일자	2018-03-21	▶ 정비책임자	한성일

점검·정비 내역

추가정비 동의여부 : 동의/부동의

<유상수리>

NO	작업내용	구분	엔지니어	기술료
1	실내공기필터		이건	30,000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

작성자

2018년 03월 21일
대표이사 이봉학



부품▶	0	기술료▶	30,000	소계▶	30,000	VAT▶	3,000	총계▶	33,000
-----	---	------	--------	-----	--------	------	-------	-----	--------

- 정비업자가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·정비를 합니다. 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)
 - 가.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
 - 나.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
 - 다.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·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
- 본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 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 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자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'부품의 구분' 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 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 포함) : A
 - 나. 재제조품 : B
 -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 : C
 - 라. 수입부품 : F

*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제 제92호 서식의 원동기 재생정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* 부가세포함.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함/경리수납인 및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합니다.